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8월 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8년 8월 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주현관)

### 가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, 조례에 사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제3호)
 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.
  - ※ 환경친화적 자동차 : 전기·태양광·하이브리드 자동차 등
- 조례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2항)
  - 제1조(목적)의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약칭(이하 “ ”이라 한다)을 각각 제7조와 제12조로 이동

- ※ 제1조의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
-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단위를 한글로 정비  
: % → 퍼센트, cc → 시시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통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,
- 법제처 법령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단위를 한글로 표기하여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”을 “「주차장법」 및”으로, “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7조제1항”을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“50%”를 각각 “5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,000cc미만”을 “1,000cc 미만”으로,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영 제6조제1항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주차장법」 및 ----- ----- 시행령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(이하 "민영주차장"이라 한다),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·도·군립공원의 주차장,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,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.</p> <p>②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</p>	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</p>



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<u>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.</u>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(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 및 농·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<u>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- 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